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결 토 보 고

1994. 12. 8.

교육사회위원회

1.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 제출일자 : 1994년 12월 1일

○ 회부일자 : 1994년 12월 1일

3. 제안이유 :

- 충청북도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토지 합병으로 번지를 변경하며
- 증평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증평도서관을 설립하며
-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법률 (법률 제4,774호, 1994. 8. 3)에 의거 해당 시에 소재한 도서관 및 아영장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도서관의 정기휴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번지중 "613 - 8"을 "38 - 6"으로 함 (안 별표 1)
- 증평도서관을 신설함 (안 별표1)
- 증원도서관의 위치중 "증원군"을 "충주시"로 함 (안 별표1)
- 부칙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조례증(별표1)의 위치난 중 "증원군"을 "충주시"로, "제천군"을 "제천시"로 함 (부칙안 제2항)

5. 검토의견

충청북도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 충청북도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토지합병으로 번지를 "613 - 8"에서 "38 - 6"으로 변경하며
- 증평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증평도서관을 신설하고,
- 경기도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처등에 관한법률 제4774호 ('94. 8. 3)에 의거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조례증 별표1의 위치난 중 "증원군"을 "충주시"로 하고 "제천군"을 "제천시"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정기휴관일 관계는 주민의 이해와 공공복리증진 차원에서 사전입법예고 과정이 필요한데도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를 위해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 첨